

##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

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  
기준은 무엇입니까?

•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"기본요건만 심사"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.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.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)

•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M1(직물지, 편물지, 합성수지지) B1(의복류), C1(침구, 마루 깔개, 커튼), F3(사무용지제품, 인쇄물), F4(포장지, 포장용 용기), A1(제조식품 및 기호품, '08.1.1부터 시행),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시('08.1.1시행), B2(복식품, '10.1.1부터 시행), B5(신발, '10.1.1부터 시행), F1(교습구, 서화용품, '10.1.1부터 시행), F2(필기구, 사무용품, '10.1.1부터 시행)이 있습니다.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합니다.

※ 정확한 분류확인용 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patent.go.kr>) → 분류/코드조회 →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 
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 
되나요?



•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,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

•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'기본요건과 공업상이용가능성,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용이창작여부만 심사'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2~3개월이 소요됩니다.